

##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代案)

議案 番號	
----------	--

提案年月日：1989. 3.

提案者：勞動委員長

### 1. 代案의 提案經緯

가.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이 1988年 11月 25日 李相洙  
議員外 70人으로부터 發議된 후 同年 12月 5日  
李仁濟·盧武鉉·鄭貞薰議員外 57人, 1989年 1月 25日  
金炳龍議員外 34人이 各各 發議하여 3個法案이 當  
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음.

나. 當委員會에서는 回附된 3個改正法律案中 2個改正  
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李仁濟·盧武鉉·鄭貞薰議員  
外 57人 發議)에 대하여 1988年 12月 13日 第144回  
國會(定期會) 第12次委員會에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  
의 檢討報告를 各各 듣고, 勞動關係法案審查小委員會를  
構成하여 同改正法律案을 審查報告하도록 하였으며, 1個  
改正法律案(金炳龍議員外 34人 發議)에 대하여는  
1989年 2月 20日 第145回國會(臨時會) 第1次委員會  
에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이미  
構成되어 있는 法案審查小委員會에서 併合 審查토록  
하였음.

다. 法案審查小委員會는 11次('88年 12月 14日, '89年 2月 13日~15日, 23日, 24日, 27日, 3月 2日~4日, 6日)에 걸쳐 同法案을 眞摯하게 審査한 결과 1個의 法律에 대하여 3個의 改正法律案이 提出되었으므로 改正案內容을 統合하여 單一案을 마련, 1989年 3月 7日 第145回國會(臨時會) 第6次委員會에 報告하여 議決함으로써 3個法律案을 各各 廢棄하고 委員會의 代案으로 本 法案을 提出하게 되었음.

## 2. 代案提案理由

勤勞基準法の 適用範圍擴大와 勤勞時間의 短縮等 勤勞者의 勤勞條件改善과 生活向上을 통해 勤勞者의 生産意慾을 提高시키고, 나아가 社會安定과 國家發展에 寄與하도록 함과 아울러 處罰規定을 強化시킴으로써 同法の 實效性을 確保하고자 함.

## 3. 代案의 主要骨子

가. 勤勞基準法을 5人 이상의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 擴大 適用하고, 4人 이하의 경우에도 이 法의 일부를 適用할 수 있도록 함(案 第10條).

나. 勤勞者를 즉시 解雇할 수 있는 勤勞者 歸責事由를 法律로써 明示함(案 第27條의 2).

- 다. 正當한 이유없는 解雇등의 救濟條項 新設(案 第 27 條의 3 ).
- 라. 退職金, 災害補償金과 3 月分の 賃金を 使用者의 總財產에 대하여 優先的으로 辯濟받도록 함(案 第 30 條의 2).
- 마. 누구든지 勤勞者의 就業을 妨害할 目的으로 名簿作成 使用 및 通信禁止條項 新設(案 第 31 條의 2 ).
- 바. 使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한 休業手當을 平均賃金の 70 %로 함(案 第 38 條).
- 사. 基本勤勞時間을 1 週 44 時間으로 함(案 第 42 條 第 1 項).
- 아. 有害·危險作業의 勤勞時間을 제한하고, 地下作業의 入·出坑時間을 勤勞時間에 포함시킴(案 第 43 條).
- 자. 年次有給休暇日數를 上向調整함(案 第 48 條).
- 차. 女子와 年少勤勞者의 夜間·休日勤勞는 勤勞者의 同意를 얻도록 함(案 第 56 條).
- 카. 女子勤勞者의 生理休暇는 請求에 관계없이 주도록 함(案 第 59 條).
- 타. 罰金額을 現實化 함.
- 파. 適當 基本勤勞時間에 관한 經過規定을 둠(案 附則 第 3 項).

공백

法律第 號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勤勞基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第2項을 新設한다.

第10條(適用範圍) ① 이 法은 常時 5人以上の 勤勞者를 사용하는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 適用한다. 다만, 同居의 親族만을 사용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과 家事使用人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常時 4人 이하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일부규정을 適用할 수 있다.

第27條의 2 第1項但書を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중 “第1項但書後段의 경우에는”을 “第1項但書의 境遇에 는”으로, “勞動委員會의 認定을 받아야 한다”를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다만, 天災·事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事業繼續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勤勞者가 고의로 事業에 막대한 地障을 초래하거나 財産上 損害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7條의 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 27 條의 3 (정당한 이유없는 解雇등의 救濟申請) ①使用者가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休職·停職·轉職·減俸 기타 懲罰을 한 때에는 당해 勤勞者는 勞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할 수 있다.

②救濟申請과 審査節次등에는 勞動組合法 第 40 條 내지 第 44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30 條의 2 第 2 項중 “最終 3 月分の 賃金은”을 “最終 3 月分の 賃金과 退職金 및 災害補償金은”으로 한다.

第 31 條第 3 項은 削除한다.

第 31 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 31 條의 2 (就業妨害의 禁止) 누구든지 勤勞者의 就業을 妨害할 目的으로 秘密記號 또는 名簿를 作成·使用하거나 通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38 條중 “平均賃金の 100 分の 60 ”을 “平均賃金の 100 分の 70 ”으로 하고, 同條但書を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事由로 事業繼續이 不可能하여 勞動委員會의 承認을 받은 경우에는 그 範圍以下の 休業支拂을 할 수 있다.

第 42 條第 1 項중 “1 週日에 48 時間”을 “1 週日에 44 時間”으로 하고 同條第 3 項중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얻어”를 “勞動部長官의 認可와 本人의 同意를 얻어”로 “다만, 事態가 急迫하여 認可

를”을 “다만, 事態가 急迫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  
를”으로 한다.

第 43 條중 “基準으로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여 이를 第 1 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 2 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地下作業에 있어서는 勤勞者의 入坑과 出坑에 소요되는  
시간을 勤勞時間에 포함시킨다.

第 48 條第 1 項중 “8日”을 “10日”로 “3日”을 “8日”  
로 한다.

第 49 條第 3 號중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勞動委員會의  
承認”으로 한다.

第 56 條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勤勞者의 同意와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얻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59 條중 “使用者는 女子가 生理休暇를 請求하는 경우에  
는”을 “使用者는 女子인 勤勞者에 대하여”로 한다.

第 90 條를 削除한다.

第 95 條第 1 項중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의 意見を 들어야  
한다”를 “過半數의 意見を 들어야 한다. 다만, 就業規  
則을 勤勞者에게 불이익하게 變更하는 경우에는 그 同意  
를 얻어야 한다”로 한다.

第10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7條(罰則) 第6條, 第7條, 第8條, 第27條第1項·第2項 또는 第31條의 2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0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9條(罰則) 第30條, 第36條, 第36條의 2, 第38條, 第46條, 第51條, 第58條 또는 第6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0條중 “500萬원”을 “1,000萬원”으로 하고, 同條 第1號중 “第27條第1項·第2項”을 削除하고, “第44條, 第50條”를 “第44條, 第45條, 第47條第1項, 第48條第1項·第3項, 第50條”로 한다.

第110條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10條의 2(罰則) 第3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1條 本文중 “250萬원”을 “500萬원”으로 하고, 同條 第1號중 “第31條第3項”과 “第45條 내지 第48條”를 削除한다.



附 則

-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賃金債權 優先 辨濟에 對한 經過措置) 第 30 條의 2의 改正 규정에 의하여 認定되는 優先辨濟는 이 법 施行이후 發生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②(經過措置) 이 법 施行當時의 行爲에 對해서는 從前의 規定에 의한다.~~
- ③(勤勞時間에 관한 經過措置) 第 42 條第 1 項의 규정에 의한 適當 勤勞時間 44 時間은 300 人 未滿의 事業 또는 事業場중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業種에 대하여는 1991 年 9 月 30 日까지 그 이외의 事業 또는 事業場에 대하여는 1990 年 9 月 30 日까지 46 時間으로 한다.

공백

新 · 舊 條 文 對 比 表

現 行	改 正 案
<p>第 10 條 ( 適 用 範 圍 ) 이 法 은  <u>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u>  <u>적용한다. 다만,同居의 親</u>  <u>族만을 사용하는 事業 또는</u>  <u>事業場과 家事使用人이나 大</u>  <u>統領令으로써 定하는 事業</u>  <u>또는 事業場에는 適用하지</u>  <u>아니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 新 設 &gt;</u></p>	<p>第 10 條 ( 適 用 範 圍 ) ① 이 法 은  <u>常時 5人이상의 勤勞者를 사용</u>  <u>하는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u>  <u>에 適用한다. 다만,同居의</u>  <u>親族만을 사용하는 事業 또는</u>  <u>事業場과 家事使用인에 대해서</u>  <u>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② <u>常時 4人 이하의 勤勞者를</u>  <u>사용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에</u>  <u>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u>  <u>바에 따라 이 法의 일부규정</u>  <u>을 適用할 수 있다.</u></p>
<p>第 27 條의 2 ( 解 雇 의 豫 告 )</p> <p>① 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하          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          日 前 에 그 豫告를 하여야          한다. 30 日 前 에 豫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 日          分 以 上 의 通 常 賃 金 을 支 給</p>	<p>第 27 條의 2 ( 解 雇 의 豫 告 )</p> <p>① .....</p> <p>.....</p> <p>.....</p> <p>.....</p> <p>.....</p> <p>.....</p>

現 行	改 正 案
<p>하여야 한다. 다만, <u>天災· 事變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事業繼續이 不可能하여 勞動 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경우 또는 勤勞者의 歸責事由로 因하여 解雇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第1項但書後段의 境遇에는 勤勞者의 歸責事由에 關하여 勞動委員會의 認定을  받아야 한다.</p>	<p>..... 다만, <u>天災· 事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事業繼續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勤勞者가 고의로 事業에 막대한 支障을 초래하거나 財 産上 損害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第1項但書의 경우에는 ..... .....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u>〈 新 設 〉</u></p>	<p>第27條의 3 (정당한 이유없는 解雇등의 救濟申請) ①使用者 가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休職·停職· 轉職·減俸·기타 懲罰을 한 때에는 당해 勤勞者는 勞動 委員會에 그 救濟를 신청할 수 있다.</p>

② 救濟申請과 審査節次등에는  
勞動組合法第 40 條 내지 第 44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30 條의 2 (賃金債權優先辨濟) 第 30 條의 2 (賃金債權優先辨濟)

① (생략)

① (現行과 같음)

② 第 1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最終 3 月分の 賃金은 使用  
者의 總財産에 대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  
된 債權,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우선하여 辨濟  
되어야 한다.

②.....  
최종 3 月分の 賃金과 退職金  
및 災害補償金은.....  
 .....  
 .....  
 .....  
 .....

第 31 條 (使用證明書) ①, ②

第 31 條 (使用證明書) ①, ②

(생략)

(現行과 같음)

③ 使用者는 勤勞者의 就業을  
故意로 妨害할 目的으로 秘  
密記號를 使用하거나 虛偽行  
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削除)

<新設>

第 31 條의 2 (就業妨害의 금지)

누구든지 勤勞者의 就業을 妨  
害할 目的으로 秘密記號 또는



하여 1週日에 12時間 限度로 延長勤勞할 수 있다.

② 削 除

③使用者는 특별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勞働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第1項의 時間을 延長할 수 있다. 다만, 事態가 急迫하여 認可를 얻을 餘暇가 없을 경우에는 事後에 지체없이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 (생략)

第 43 條 (有害·危險作業) ①

地下作業 其他 大統領令으로써 定한 有害, 危險한 作業은 1日에 6時間, 1週에 36時間을 基準으로 한다. 다만, 勞働部長官의 認可를 얻은 境遇에는 1日 2時間 以內, 1週日 12時間 以內의 限度로 延長할 수 있다.

<新設>

.....  
.....

③.....

..... 勞働部長官의 認可와 本人의 同意를 얻어

..... 다만

事態가 急迫하여 勞働部長官의 認可를 .....

.....  
.....

④ (現行과 같음)

第 43 條 (有害·危險作業) ①

.....  
.....

36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  
.....

② 地下作業에 있어서는 勤勞







現 行	改 正 案
<p>第 95 條 (規則의 作成, 變更의 節次) ①使用者는 就業規則의 作成 또는 變更에 關하여 當該 事業場에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있는 境遇에는 그 勞動組合,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없는 境遇에는 勤勞者의 <u>過半數를 代表하는 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u></p> <p>② (생략)</p>	<p>第 95 條 (規則의 作成, 變更의 節次) ①..... ..... ..... ..... ..... ..... ..... ..... ..... <u>過半數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다만, 就業規則을 勤勞者에게 不利益하게 變更하는 경우에는 그 同意를  얻어야 한다.</u></p> <p>② (現行과 같음)</p>
<p>第 107 條 <u>第 6 條, 第 7 條 또는 第 8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u>는 5 年以下의 懲役 또는 <u>1,500 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u></p>	<p>第 107 條 <u>第 6 條, 第 7 條, 第 8 條, 第 27 條第 1 項·第 2 項 또는 第 31 條의 2.....</u> <u>3,000 萬원.....</u> .....</p>

第 109 條

第 30 條, 第 36 條, 第 36 條의 2, 第 51 條, 第 58 條 또는 第 67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 110 條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の 懲役 또는 500 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1. 第 9 條, 第 26 條第 1 項, 第 27 條第 1 項·第 2 項, 第 27 條의 2, 第 28 條, 第 42 條第 1 項·第 3 項, 第 43 條, 第 44 條, 第 50 條, 第 55 條, 第 56 條, 第 57 條, 第 60 條, 第 61 條, 第 64 條第 1 項, 第 65 條, 第 66 條, 第 68 條, 第 76 條, 第 78 條, 第 79 條, 第 80 條, 第 82 條, 第 83 條

第 109 條

第 30 條, 第 36 條, 第 36 條의 2, 第 38 條, 第 46 條, 第 51 條, 第 58 條 또는 第 67 條의 .....  
.....  
... 2,000 萬원 .....  
.....

第 110 條

.....  
.....  
..... 1,000 萬원 .....  
.....

1. ....  
第 27 條의 2, .....  
.....  
.....  
第 44 條, 第 45 條, 第 47 條第 1 項, 第 48 條第 1 項·第 3 項, 第 50 條, .....  
.....  
.....  
.....

現 行	改 正 案
<p>와 第 105 條第 2 項에 違反한 者.</p>	<p>..... .....</p>
<p>2. (省 略)</p>	<p>2. (現行과 同一)</p>
<p>3. (省 略)</p>	<p>3. (現行과 同一)</p>
<p>第 110 條의 2</p>	<p>第 110 條의 2</p>
<p><u>第 37 條 또는 第 38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p>	<p><u>第 37 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0 萬원</u> ..... .....</p>
<p>第 111 條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u>250 萬원</u> 以下의 罰金의 處한다.</p>	<p>第 111 條 ..... ..... <u>500 萬원</u> ..... .....</p>
<p>1. 第 5 條, 第 13 條, 第 21 條 第 22 條, 第 24 條, 第 25 條 第 31 條第 1 項·第 2 項·第 3 項, 第 32 條, 第 33 條, 第 39 條, 第 40 條, 第 42 條第 3 項但書, 第 45 條, 第 46 條 第 47 條, 第 48 條第 1 項·第 3 項 第 52 條, 第 53 條, 第</p>	<p>1. .... ..... <u>(削 除) (第 31 條第 3 項)</u> ..... ..... <u>(削 除) (第 45 條 내지 第 48 條)</u> ..... .....</p>
<p>59 條, 第 62 條, 第 63 條, 第 64 條第 2 項, 第 69 條, 第</p>	<p>..... .....</p>

70條, 第71條第1項·第2  
項, 第72條第1項, 第73條  
第1項, 第74條, 第75條第  
3項, 第92條, 第94條, 第  
95條, 第96條, 第99條第  
2項, 第100條, 第101條  
와 第104條의 規定에 違  
反한 者.

2. ~ 5. (생략)

.....  
.....  
.....  
.....  
.....  
.....  
.....  
.....  
.....

2. ~ 5. (現行과 같음)

공백